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담배 정의 확대 등〉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86호)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99호)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0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86호)	1
2.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99호)	1
3.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02호)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86호)	1
2.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99호)	2
3.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02호)	3
III . 검토의견	4
1. 담배 정의 확대(안 제2조제1호 등)	4
2. 담배소매인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 신설(이인선 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13

I. 제안경위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86호)

가.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5.

다. 회 부 일 : 2025. 8. 6.

2.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99호)

가. 발 의 자 : 서명옥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8. 11.

다. 회 부 일 : 2025. 8. 12.

3.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02호)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8. 21.

다. 회 부 일 : 2025.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86호)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두어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이나 판매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여 기존 법령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담배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담배 판매 책임 및 준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담배 소매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담배 판매 시장의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의2 신설 등)

2.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99호)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

로 포괄해 제조·수입·판매·세율·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3.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02호)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일명 무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6 등).

Ⅲ. 검토의견

1. 담배 정의 확대 (안 제2조제1호 등)

현 행	이인선 의원안	서명옥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u> 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제2조제1호).	○ “담배”란 <u>연초(煙草)</u> 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담배”란 <u>연초(煙草), 니코틴</u> 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담배”란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u> 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제2조제1호). - 가. <u>연초(煙草)</u> - 나. <u>합성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u> - 다. <u>유사니코틴(기목 또는 니목 외에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합성물질로서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제조된 물질)</u> - 라. <u>그 밖에 니목 또는 다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u>

현행	이인선 의원안	서명옥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	○	○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는 합성니코틴 포함 여부 및 그 용량을 별도 표시(제25조의2제2항 신설) ○ 합성니코틴 표시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7조의2)	○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제25조의6 신설) ○ 오인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7조의2)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¹⁾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쉐련·액상 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초의 줄기·뿌리 등 연초의 잎 외의 부분과 합성니코틴(이하 ‘합성니코틴등’)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등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현행 담배에 적용되는 전자거래 금지²⁾, 경고문구 표시 의무 및 광고 제한³⁾, 온라인 판매제한⁴⁾

1) 「담배사업법」 제2조(담배의 정의)는 연초 잎을 이용하는 액상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2014년 1월에 ‘증기로 흡입하는 경우’를 담배의 정의에 추가한 이후로 개정되지 않음.

2)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 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

등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실제로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영업장 외 광고⁵⁾를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시가 있었음⁶⁾.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관한 미적용 규제 현황]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법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조업허가 (제11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제9조)	유해성분정기검사 및 제출 (제11·12조)
우편판매 전자거래 금지 (제12조)	담배 경고문구 표시 (제9조의2)		
담배판매업 등록 (제13조)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3)		
소매인 지정 (제16조)	담배 광고 금지 (제9조의4)		
판매가격 신고 (제18조)			
광고제한 (제25조)			
성분 표시(제25조의2)			
오도문구 사용제한 (제25조의5)			

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③ (생략)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2022고정1030담배사업법위반(예비적 죄명 국민건강증진법위반), 선고: 2023.1.11.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⁷⁾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⁸⁾가 있음. 그러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무인자판기를 통하여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⁹⁾.

또한, 「지방세법」¹⁰⁾, 「개별소비세법」¹¹⁾ 및 「국민건강증진법」¹²⁾은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경우도 담배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제세부담금¹³⁾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

7) 용역수행기관: 캠퍼데이터부설국제특성분석연구소, 용역기간: 2024.6.~2024.11.

8) 연구용역에 따르면 피부·호흡기에 자극성을 가진 포름산·아세트산은 연초니코틴 대비 2.8배, 발암물질이면서 환경호르몬인 DEHP(di(2-ethylhexyl) phthalate)는 2.4배 높게 검출

9) KTV, 청소년 유혹하는 '전자담배'...성인 인증 사각지대 [현장고발]

10)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飲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3) 제세부담금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폐기물부담금

제가 제기되고 있음.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담배종류		부과 기준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개 별 소비세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엽연초 부담금	합 계
궐련		20개비	1,007	443	594	841	24.4	5	2,914.4
파이프담배		1그램	36	16	21	30.2	-	-	103.2
엽궐련		1그램	103	45	61	85.8	-	-	294.8
각련		1그램	36	16	21	30.2	-	-	103.2
전자담배	액상형	1밀리리터	628	276	370	525	1.2*	-	1,800.2
	궐련형	20개비	897	395	529	750	24.4	-	2,595.4
	고형물	1그램	88	39	51	73	24.4	-	275.4
물담배		1그램	715	315	422	1,050.1	-	-	2,502.1
씹는 담배		1그램	364	160	215	34.4	-	-	773.4
머금은 담배		1그램	364	160	215	534.5	-	-	1,273.5
냄새맡는 담배		1그램	26	11	15	21.4	-	-	73.4

자료: 기획재정부

*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기물 부담금은 카트리지 당 24.4원 부과(1개당 1.22원)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담배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 법상 담배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유사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유사담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이인선 의원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煙草)”를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대하고 있고, ② 서명옥 의원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煙草),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대하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하여 “합성니코틴 포함 여부 및 용량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③ 박성훈 의원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및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대하면서, “유사담배를 담배로 오인하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담배 정의를 ‘원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DD20457)」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2025.9.25.)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DD20457)」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①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율함으로써,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음.

② 또한,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담배 정의가 확대될 경우 이미 영업 중인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¹⁴⁾

1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하여 폐업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③ 한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제세부담금(1ml 기준 약 1,800원)을 부과하는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DD20457)」 부대의견

가.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에 의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업종 전환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에 의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효과 및 과세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DD20457)」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담배의 범위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포함되어 현행 「담배사업법」¹⁵⁾ 및 시행령¹⁶⁾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표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명옥의원안 제25조의2제2항과 같이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하여 합성니코틴 표시 의무를 별도로 부과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한편, 박성훈 의원안은 담배 정의를 ‘유사니코틴으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15) 「담배사업법」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1.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 각 호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용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나.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은 최종단계의 포장

④ 제3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구체적인 용량표시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니코틴의 제조·유통·판매가 확산될 수 있는
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규제 형평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의 담배 정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니코틴의 양태가 다양하므로 위해성·중독성 등에 대한 검사·조사
후 규제 필요성에 대한 근거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등 유
사니코틴이 위해성 검증 없이 수입·제조·유통·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
택하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DD20457)」에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¹⁷⁾.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DD20457)」 부대의견

다. 정부는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니코틴 확산에 따른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체 흡입용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
한다.

17) 기획재정부는 유사니코틴의 경우 위해성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유사니코틴에 대한 규제
방식은 관계 부처간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2. 담배소매인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 신설(이인선 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이인선 의원안
○ <신 설>	○ <u>담배소매인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 신설</u> (안 제17조의2 신설) - 담배소매인은 담배 판매 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1항) - 기획재정부장은 담배 소매인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안 제3항)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탈세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 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간의 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담배소매인은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함¹⁸⁾.

18)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

한편, 담배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 보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 담배소매인 관계 규정은 다양한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담배소매인이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배 관련 규제를 위반할 우려가 있음.

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담배소매인 관계 법령 현황]

관계 법령	주요 내용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소매인 지정 및 지정취소)	소매인 결격사유 및 지정취소 요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¹⁹⁾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및 금연구역 지정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악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²⁰⁾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표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²¹⁾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1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0)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악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악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악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악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악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악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현재 한국담배협회²²⁾가 담배소매인제도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충처리센터는 자율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 소매인에 대하여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

개정안은 담배소매인에게 담배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담배의 판매 및 유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의성 없이 담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소매인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식품위생법」²³⁾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²⁴⁾은 각각 영업자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교육 및 안전위생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① 한국담배협회가 2006년부터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여 담배소매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의무화 실익이 낮고, ② 담배소매인 지정 및

22) 로스만스파이스트비브이(영업소), JT International KOREA, KT&G, 한국필립모리스(주) 등 담배 제조업체 및 수입 판매업체 등 4개 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기획재정부 인가 비영리사단법인

23)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이양 사무이므로 담배소매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소매인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교육의 통일성·일관성이 저해되고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전국의 담배소매인 규모가 약 12.6만개소임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과 함께 교육 관련 관리·감독이 어려워 교육 의무화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이인선 의원안	서명옥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1. “담배”란 연 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 거나, 빨거나, 증 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 다.	1. ----- 연초(煙草)를----- ----- ----- ----- ----- ----- ----- -----.	1. -----연 초(煙草), 니 코틴----- ----- ----- ----- ----- ----- -----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 ----- ----- ----- ----- ----- -----.
<신 설>			가. 연초(煙 草)
<신 설>			나. 합성니코 틴(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 적인 반응 을 일으켜 얻어진 물 질을 합성 하여 인공 적으로 제 조된 니코

			<u>틴을 말한</u> <u>다)</u> <u>다. 유사니코</u> <u>틴 (가 목</u> <u>또는 나목</u> <u>외에 니코</u> <u>틴과 유사</u> <u>한 화학구</u> <u>조를 가진</u> <u>합 성 물 질</u> <u>로서 니코</u> <u>틴과 유사</u> <u>한 효과를</u> <u>내도록 제</u> <u>조된 물질</u> <u>을 말한</u> <u>다)</u> <u>라. 그 밖에</u> <u>나목 또는</u> <u>다목과 유</u> <u>사한 것으</u> <u>로서 대통</u> <u>령 령 으 로</u> <u>정하는 화</u> <u>학물질</u>
2. (생 략)	2. (현행과 같	2. (현행과 같	2. (현행과 같
<u><신 설></u>	음)	음)	음)
	<u>제17조의2(소매인</u>		
	<u>에 대한 교육)</u>		
	<u>① 제16조제1항</u>		

에 따라 소매인
으로 지정받은
자는 담배의 판
매질서 등에 관
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소
매인으로 신규
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매
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
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
시하기 위하여
담배 판매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을 교육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
른 교육의 내용
· 방 법 · 절 차
및 제2항에 따
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

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
한다.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 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합성니코틴
(원소 ·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

--용액 또는 담
배의 원료로 사
용한 화학물질-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

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이 함유된 담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합성니코틴의 포함 여부 및 그 용량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
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

[illegible]

⑤ 제1항 및 제

② ~ ④ (현행
과 같음)

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u>2항</u>----- ----- ----- ----- ----- ----- -----.	
<u><신 설></u>		<u>제25조의6(담배 오인 표시 및 광고의 제한)</u> 누구든지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u>제25조의2제1</u>	제27조의2(벌칙) 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25조의2제1</u>	제27조의2(벌칙) ① ----- ----- ----- ----- ----- -----. 1. ~ 7. (현행과 같음)

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7. (생략) <u><신설></u>	<u>항 및 제2항-</u> ----- ----- ----- ----- ----- ----- ----- 7. (현행과 같음)	8. <u>제25조의6을 위반하여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u>
② (생략)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벌칙)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제25조의2제4

항에 따른 담
배의 수입 또
는 판매의 제
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한 자

4.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25조의2제2

항에 따른 담
배 성분 측정
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
만, 사실상 폐
업 상태에 있
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5

항-----

4. (현행과 같
음)

제28조(과태료)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의2제3

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 음)	
제30조(몰수와 추 징) ① 제27조·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 련된 <u>연초의 잎</u> 과 담배는 몰수한다.	제30조(몰수와 추 징) ① ----- ----- ----- ---- <u>연초와</u> ----- -----.	제30조(몰수와 추 징) ① ----- ----- ----- ----- <u>연초, 니코틴</u> ----- -----.	제30조(몰수와 추 징) ① ----- ----- ----- ----- <u>담배의 원료와</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 음)

문 의 처
02)6788-5150

참고 1

합성니코틴 규제 관련 해외사례

-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하여 규제 중

* 전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정의: 미국, 칠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 5개국

담배제품과 별도로 전자담배를 정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9개국

※ (미국 담배제품 정의)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de or derived from tobacco, or containing nicotine from any source, ... (Food, Drug, and Cosmetic Act, '23.4월)

- 19개국에서 전자담배(합성니코틴 포함)에 대해 과세 부과 중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및 과세 현황(보건복지부, 24.8월) >

연번	담배협회 조사			복지부 확인 결과			
	국가명	규제	과세	규제	정의 기준		과세
					담배제품 ¹⁾	전자담배 ²⁾	
1~3	콜롬비아, 일본, 한국	X	X	X			X
4~5	멕시코, 튀르키예	X	X	O (전자담배 판매 금지)			X
6	미국	O	각주마다 상이	O	O		각주마다 상이
7	칠레	O	X	O	O		X
8	아이슬란드	O	X	O	O		X
9	아일랜드	O	X	O	O		X
10	이스라엘	O	O	O	O		O
11	코스타리카	X	O	O		O	O
12	벨기에	O	O	O		O	O
13	캐나다	O	O	O		O	O
14	체코	O	O	O		O	O
15	덴마크	O	O	O		O	O
16	에스토니아	O	O	O		O	O
17	핀란드	O	O	O		O	O
18	독일	O	O	O		O	O
19	그리스	O	O	O		O	O
20	헝가리	O	O	O		O	O
21	이탈리아	O	O	O		O	O
22	라트비아	O	O	O		O	O
23	리투아니아	O	O	O		O	O
24	노르웨이	O	O	O		O	O
25	폴란드	O	O	O		O	O
26	포르투갈	O	O	O		O	O
27	슬로바니아	O	O	O		O	O
28	스웨덴	O	O	O		O	O
29	프랑스	O	X	O		O	X
30	룩셈부르크	O	X	O		O	X
31	네덜란드	O	X	O		O	X
32	뉴질랜드	O	X	O		O	X
33	슬로바키아	O	X	O		O	X
34	호주	O	X	O		O	X
35	오스트리아	O	X	O		O	X
36	스위스	O	X	O		O	X
37	영국	O	X	O		O	X

* 1) 담배제품(Tobacco Products)의 정의 내에 전자담배를 포함

2) 별도의 법령 또는 조항을 통해 Vaping Products, e-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등으로 정의

참고 2

현행 니코틴 · 무니코틴 관리 현황

□ 농도에 따른 니코틴 관리 현황

구 분	니코틴												無니코틴
	1% 미만				1% 이상 ~ 2% 이하				2% 초과				
	연초		합성 연초·합성 外 (가지과 식물 등)	연초		합성 연초·합 성外 (가지과 식물 등)	연초		합성 연초·합 성外 (가지과 식물 등)				
	잎	줄기·뿌리		잎	줄기·뿌리		잎	줄기·뿌리					
담배사업법	○	×	×	×	○	×	×	×	○	×	×	×	×
화학물질관리법*	×				○ (담배용도로 판매 시 영업허가 면제*)				○ (영업허가 대상)				×
(참고) 담뱃세	○		×	×	○		×	×	○		×	×	×
(참고) 약사법	○ (일반의약품)												○ (의약외품)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기구(UN)에서 정한 유독물질 기준(함유량의 1% 이상)에 따라 니코틴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규제. 다만, 담배 용도는 껴런(니코틴 함유량 통상 1.6%~2%)과 유사한 수준인 2% 이하로 희석된 경우 영업허가 면제